

2026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

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
2026년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
공고합니다.

2026. 1. 15.

원 주 시 장

■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

1. 지원규모: 300억원 (*은행자금 활용)
- 일반기업 290억원, 장애인고용우수기업 10억원
2. 지원대상: 본사,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하며 다음에
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(부동산,
신용, 보증서 등)이 있는 기업

① 제조업 ② 지식정보 관련업 ③ 건설업(2년 이상 사업영위) ④ 관광업 ⑤ 도소매업
⑥ 숙박업, 이미용업, 목욕장업, 세탁업 ⑦ 일반음식점업 ⑧ 자동차정비업 ⑨ 운수업
※ 지식정보 관련업 업종분류 [별표 1] 참조
※ 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제외 [별표 2] 참조

3. 지원개요

구 분			지 원 조 건			
			대출한도	지원내용 (이자보전)	우 대	기 간
중소기업육성자금	관내 중소기업	일반 기업	운전자금(3억 원) : 전년도 매출액의 1/4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 시설자금 : 총소요액의 75% 내 제조업 8억 원 그 외 업종 2억 원	3.0%	0.5% : 여성·장애인· 원주형강소· 유망중소·백 년·일자리대 상기업	2년 + 1년 연장가능 (최장 3년)
		장애인 고용 우수기업	운전·시설자금 중복 신청 시: 5억원	3.5%	-	2년 + 2년 연장가능 (최장 4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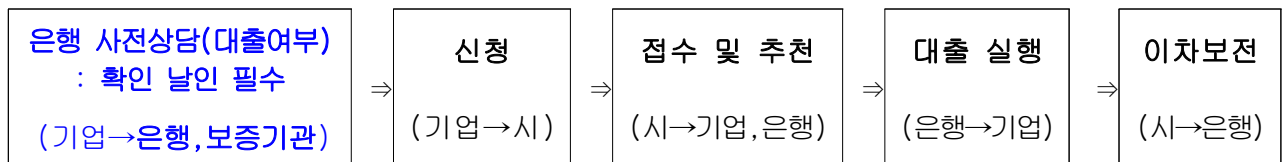
4. 신청기간: 2026. 1. 29.(목) 09:00 ~ 자금 소진 시

5. 접수방법: 원주시청 지하1층 다목적홀 방문신청(우편접수 불가)

※ 29일 이후 원주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 방문신청

6. 신청서식 : 별첨 「신청서식」 별지 1호, 별지 2호 서식 참조

7. 처리절차



8. 용자조건

○ 용 도: 기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

① 운전자금: 인건비, 재료비, 연구개발 등 기업경영 소요 자금

② 시설자금

- 공장 매입 및 증축, 신축 등 소요 자금(제조업)

- 기계 등 설비의 매입 소요 자금 등(제조업, 기타 업종)

- 부지매입비는 산업(농공)단지 입주계약 기업에 한정

○ 용자기간: 기본 2년 (단, 일반기업 1년, 장애인고용우수기업 2년 연장 가능)

※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으로 신청한 기업은 대출일 기준 2년 만기 전에 장애인 고용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,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지원요건을 충족 시 지원기간을 1회(2년) 연장함.

○ 용자한도

- ① 운전자금: 전년도 매출액의 1/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의 범위 내, 3억 원 이하
- ② 시설자금: (부가가치세 제외한 계약서 상의)소요액의 75% 범위 내(제조업 8억 원, 기타업종 2억 원 이하)

③ 운전·시설자금 중복 신청 시 5억 원 이하

※ 기존 수혜 자금 있을 경우 포함하여 한도 적용

※ 지원 종료 후 1년 동안 상환 금액 만큼 자금 추천 제한

※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미수혜기업(신청일 기준)에 우선순위 부여

○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지원요건

① 신청일 현재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

구 분	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인원	
	소기업 (상시근로자 50명 미만)	중기업 (상시근로자 50~299명)
장애인고용 우수기업	기준인원 + 1명이상 고용	기준인원 + 2명이상 고용

② 신청일 현재 장애인 수가 기준인원 이상인 기업

※ ①번 항목으로 신청기업은 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인원(기업규모 변동시 변동된 해당기준 적용)을 유지하고, ②번 항목으로 신청기업은 장애인 기준인원수 이상을 유지하여야 지원기간 연장 가능

《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지원요건 관련 용어의 정의》

- 장애인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장애인
- 상시근로자는 신청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
- 기준인원: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25조의 고용장려금에 관한 의무고용률(총 근로자수 × 0.031)에 따른 장애인 수

9. 지원제외 대상

○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용자추천 제외 대상 업체

- ① 용자금 추천한도를 초과하는 업체
-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(대출이 불가능한 업체)
- ③ 대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

- ④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업체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체
- ⑤ 사치·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
-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업체(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)
-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서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업체(추천결정일로부터 1년)
- 세금(국세, 지방세)을 체납 중인 업체
-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,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

10. 지원내용: 일반기업 연 3%,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연 3.5% 이차보전
(일반기업 중 여성·장애인·원주형강소·유망중업·백년·일자리 대상기업 0.5% 추가 보전)

11. 용자기관: 원주시 소재 19개 협약은행 [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, 수협은행, 산업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SC제일은행, 원예농협, 축협, 농협(원주, 문막, 남원주, 판부, 신림), 새마을금고, 신협, 아이엠뱅크]

12. 대출실행 유효기한: 용자추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
(운전자금은 연장불가, 시설자금은 1회 3개월 연장가능)
※ 은행 대출 상담 시 구비 서류는 해당 은행에 문의 후 방문 요망

13. 구비서류

-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, 사업계획서[서식 1, 2] 각 1부
- 사업자등록증 1부
- 2024년 결산재무제표(법인)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개인사업자) 1부
(※ 창업기업은 회계법인, 세무사 등에서 작성한 추정 재무제표)
- 해당 업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(공장등록증 등 각종 등록증, 신고증, 영업 허가증 등)
- 유효기간 내 우대 조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
(여성·장애인·원주형강소·유망중소·백년·일자리대상기업 확인서)

-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(유효기간 내) 각 1부
- 시설자금의 경우 사용 용도별 계약서(신청서식 내 세부서류 확인) 각 1부
-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으로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각 1부
 - 고용보험 가입자목록(신청 월)
 - 장애인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
 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, 장애진단서
 - 장애인 근로계약서 및 최근 임금대장

14. 선정방법

- 용자규모 범위 내 지원업체(지원제외 사유가 없고 지원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) 추천 결정
-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자금 잔여분은 일반기업으로 추천

15. 사후관리

- 용자금의 사용실태 조사 실시
 - 용자금은 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집행하여야 하며, 특히 **기 대출금 상환(대환) 용도로 사용 불가**
 - 용자금 전액 사용 시 **집행결과서[서식4]와 용자금 계좌거래내역,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자료를 함께 6개월 내 제출하여야 함**
 -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이 중단, 환수됨
- 용자추천 받은 업체는 용자금을 대출받은 이후에는 대출기관을 변경할 수 없음

16. 문의: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지원팀(☎ 033-737-2975)

② 원주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[이차보전 지원사업과 별개 사업]

1. 지원규모: 4억 원

2. 지원대상: 원주시에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(제조업, 지식정보 관련업)

3. 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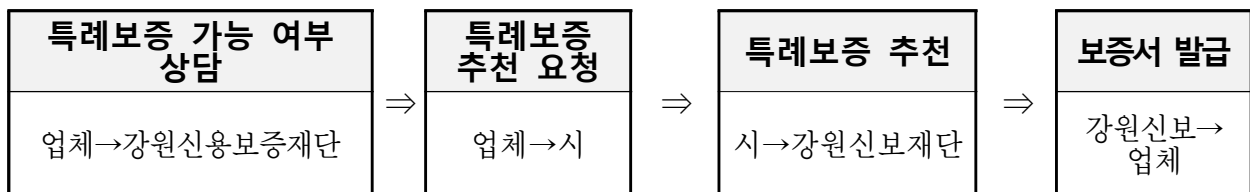
- 특례보증(완화된 보증심사 기준 적용) 추천을 통한 자금 대출 지원
- 보증한도

보증대상	보증한도액	비 고
중소기업	1억원	시설 및 운전자금
소상공인(법인사업자)	5천만원	

- 보증기간: 최대 5년 이내
- 「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」과 중복 신청 가능

4. 신청기간: 2026. 1. 29.(목) ~ 자금 소진 시

5. 신청방법 :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방문 상담 후 시에 추천서 발급 요청



※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☎ 033-260-0053

(주소: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1층)

6. 구비서류

- 신용보증신청서 사본(은행 날인), 금융거래확인서
- 사업자등록증, (국세)납세증명서, 지방세납세증명서
- (법인)재무제표, 법인등기부등본 (개인)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
- 대표자 주민등록등본, 부동산 등기부등본(사업장 및 거주지)

[별표 1] 도지사가 정한 지식정보업 지원대상 업종

구분	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	대상업종
정보통신업	581	서적,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
	582	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	5911	영화,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
	5912	영화,비디오물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업
	59201	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
	612	전기통신업
	620	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
	631	자료처리, 호스팅,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
	639	기타 정보 서비스업
전문,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701	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
	702	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
	713	광고업
	714	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
	71531	경영컨설팅업
	721	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
	729	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
	732	전문 디자인업

[별표 2]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제외 업종 中

구분	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	대상업종
제조업	33402 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 中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도매 및 소매업	46102 中	담배 중개업
	4633 中	담배 도매업
숙박 및 음식점업	5621	주점업
정보통신업	5821 中	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9124 中	갬블링 및 배팅업